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16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이상원 · 고병준 · 권인순

김승수 · 신종갑 · 안미자

오옥자 · 이한동 · 장영준

채우진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와 상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제도임.

하지만 마포구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정이 까다롭고, 조례 제명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지원사업 등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사업을 추가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안 제2조제1호)

나.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규정 신설(안 제6조)

3. 관계법령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제11조, 제11조의2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5. 10. 2. ~ 10.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0개”를 “25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 ----- -----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u>30개</u>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1. ----- ----- ----- -- <u>25개</u> ----- --
2. (생 략) <u><신 설></u>	2. (현행과 같음) <u>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u> <u>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u> <u>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u> <u>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u>

	5. <u>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u> <u>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항</u>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관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비용 소요

나. 관련조문

-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최현민
연 락 처	02-3153-8582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30호, 2025. 7. 1., 일부개정]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